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언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5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7.

발 의 자:이언주·민병덕·민형배

이재강 · 소병훈 · 정성호

이상식 · 이재관 · 이광희

오세희 • 박지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, 중앙당과 시·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. 또한 예상하였던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, 과거와 달리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,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복원하여,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,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

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규모와 비용 절감,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정당은 중앙당과 시·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, 지 구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 (안 제6조 및 제9조).
- 다.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고,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라. 지구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고 해당 지역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함(안 제18조의3 신설).
- 마.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하여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도록 함(안 제30조제1항).
- 바. 지구당은 시·도당과 동일하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 35조제1항).
- 사.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

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의3 신설).

아. 기존 지역위원회는 폐지함(안 제37조제3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특별시·광역시·도"를 "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"로,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한다)"를 "시·도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(이하 "지구당"이라 한다)"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"를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및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"으로 한다. 제6조 중 "100명 이상의"를 "100명 이상의, 지구당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의"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창당승인)"을 "(시·도당 및 지구당의 창당승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9. 지구당의 소재지와 명칭
- 10. 지구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

제13조의 제목 "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을 "(시·도당 및 지구당

의 등록신청사항)"으로 한다.

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를 "제 13조(시·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)"로 한다.

제2장에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① 정당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한다.

- ②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구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 ① 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해당지구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

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, 지구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당" 이 기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·도당, 지구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원은 본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·도당 또는 지구당에도 각각 소속된 것으로 본 다.

제24조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또는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또는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, 지구당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구당"으로 한다.

이 경우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·도당 또는 지구당은 해당 탈당원이 속하였던 지구당 또는 시·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26조 전단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27조의2제1항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"중앙당이 정한다"를 "중앙당이 정하며, 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"로 한다.

제35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당"을 각각 "시·도당 및 지구당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중앙당과 시·도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을 "중앙당과 시·도당 및 지구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및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으

로 한다.

제5장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)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위치한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을 "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및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"으로 한다.

제46조의 제목 "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"를 "(시·도당 및 지구당 창당승인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및 지 구당"으로 한다.

제47조 중 "시·도당"을 "시·도당 또는 지구당"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제1호 중 "제13조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"를 "제13조(시·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항)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당의 등록 및 성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정당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 및 성립된 정당으로 본다. 다만, 각 정당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당의 등록 및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정당은 수도에 소재	제3조(구성)
하는 중앙당과 <u>특별시·광역시</u>	<u>특별시·광역시</u>
<u>·도</u> 에 각각 소재하는 <u>시·도</u>	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자치도
당(이하 "시·도당"이라 한다)	<u>(이하 "시·도"라 한다)</u>
으로 구성한다.	<u>시</u> ·도당(이하 "시
	•도당"이라 한다) 및 국회의
	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
	지구당(이하 "지구당"이라 한
	<u>다)</u> .
제4조(성립) ① (생 략)	 제4조(성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등록에는 <u>제17조</u>	② <u>제17</u> 조
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	(법정시・도당수), 제18조(시・
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	도당의 법정당원수), 제18조의2
을 구비하여야 한다.	(법정지구당수) 및 제18조의3
	<u>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</u>
제6조(발기인) 창당준비위원회는	제6조(발기인)
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	
의, 시·도당의 경우에는 <u>100명</u>	<u>100</u> 명
<u>이상의</u> 발기인으로 구성한다.	이상의, 지구당의 경우에는 50
	명 이상의
제9조 <u>(시·도당의 창당승인)</u> <u>시·</u>	제9조 <u>(시·도당 및 지구당의 창</u>

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

- ①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8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13조<u>(시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</u>

① ~ ③ (생 략)

제14조(변경등록)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및 제13조(시 ·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<u> </u>
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
①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지구당의 소재지와 명칭
10. 지구당의 대표자의 성명・
<u>주소</u>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13조 <u>(시·도당 및 지구당의 등</u>
<u>록신청사항)</u> ① ~ ③ (현행
과 같음)
제14조(변경등록)
제13조(시
·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
<u>사항)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① 정당
은 30 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

<신 설>

제19조(합당) ① • ② (생 략)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·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 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·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④ 신설합당된 정당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 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

한다.

- ② 1개의 시·도에 두는 지구 당의 수는 전체 지구당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수)
 - ① 지구당은 100명 이상의 당 원을 가져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 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 은 해당 지구당의 관할구역 안 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.

제19조(합당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3	
<u>시·도당</u>	및
지구당	
시·도당 및 지구당	
4	

다음 날에 당해 <u>시·도당</u>은 소 멸된 것으로 본다.

⑤ (생략)

제23조(입당) ① 당원이 되고자 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<u>시</u>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.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, 시·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등재된 때에 발생한다.

<u>시·도당 및 지</u>
<u> 구당</u>
⑤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입당) ①
<u>\lambda</u>] •
<u>도당, 지구당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<u>시·도당, 지구당</u>
<u>\lambda</u> •
<u>도당, 지구당</u>

③ 입당신청인은 시·도당 또 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 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 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 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 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 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.

④ (생 략) <신 설>

③ <u>시·도당, 지</u>
<u>구당</u>
<u>入</u> ・
<u>도당, 지구당</u>
·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라 시・도당, 지구당 또는 그
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
하여 입당의 효력이 발생한 당
원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
는 시・도당 또는 지구당에도

- 제24조(당원명부) ① <u>시·도당</u>에 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 다.
 - ② 중앙당은 <u>시·도당</u>의 당원 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시·도당</u>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 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<u>시·도</u>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5조(탈당) ① 당원이 탈당하고
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
소속 <u>시·도당</u>에 탈당신고를
하여야 하며, 소속 <u>시·도당</u>에
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
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
있다.

- 1. ~ 3. (생략)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

각각 소득된 것으로 돈다.
제24조(당원명부) ① <u>시·도당 및</u>
<u> 지구당</u>
② <u>시·도당 및 지구</u>
<u>당</u>
<u>入</u> <u>人</u>] •
도당 또는 지구당
<u>\lambda\] •</u>
도당 또는 지구당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25조(탈당) ①
<u>시·도당 또는 지구당</u>
<u>시·도</u>
<u>당 또는 지구당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

- <u>시·도당</u> 또는 중앙당에 접수 된 때에 발생한다.
- ③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·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 소하고,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. <<u>후단 신설></u>
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 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 부하고, 해당 <u>시·도당</u>에 통보 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 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26조(탈당원명부) <u>시·도당</u>에는 지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 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 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7조의2(입당원서·탈당신고서 저의 보관 및 폐기) ① 시·도당

<u>시·도당, 지구당</u>
③
○ 시·도당 또는 지구당
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 시
•도당 또는 지구당은 해당 탈
당원이 속하였던 지구당 또는
시·도당에 각각 그 사실을 알
<u>려야 한다.</u>
4
시·도당 또는 지구
당
<u>o</u>
· 제26조(탈당원명부) 시·도당 및
 지구당
제27조의2(입당원서·탈당신고서
의 보과 및 폐기) ① 시·도당

은 당원명부・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지 5년이지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자매체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)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 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시·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·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35조(정기보고) ① 중앙당과 <u>시</u>
<u>•도당</u>은 매년 12월 31일 현재
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
다음 연도 2월 15일(<u>시</u>•도당
은 1월 31일)까지 관할 선거관
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중앙당은 당해 연도의
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
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
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30조(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
제한) ①
<u>중앙당이 정하며,</u>
지구당에는 1명을 초과할 수
없다.
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정기보고) ①시
<u>・도당 및 지구당</u>
<u>시·도당 및 지구당</u>
•

계획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 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 | 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생 략) <신 설>

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제37조(활동의 자유) ① · ② (생 략)

③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<삭 제> <u> 자치구・시・군,</u> 읍·면·동별 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누구든지 시·도당 하부

② 중앙당과 시·도당은 제17 ② 중앙당과 시·도당 및 지구 당은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 수), 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및 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 원수)의 요건---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3(지방자치단체 공유재 산의 무상 사용) 지방자치단체 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지구당 의 사무실 지원을 위하여 「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|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(현행과 같음)

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 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 다.

- 제44조(등록의 취소) ① 정당이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.
 - 1.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 및 제1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. 다만,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후 3월까지,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그 취소를 유예한다.

2. ·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6조(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)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 위원회는 시·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, 당헌 또는 규약

44조(등록의 취소) ①
 1. 제17조(법정시·도당수), 제1
8조(시·도당의 법정당원수),
제18조의2(법정지구당수) 및
제18조의3(지구당의 법정당원
<u>수)의 요건</u>
2.·3. (현행과 같음)② (현행과 같음)
46조 <u>(시·도당 및 지구당 창당</u>
승인의 취소)
시·도당 및
<u>지구당</u>

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 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 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.

제47조(해산공고 등) 제45조(자진 해산)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 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·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 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허위로 제12조(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) 또는 제13조(시 •도당의 등록신청사항)의 등록신청을 한 자
- 2. (생략)
- 3. 제37조(활동의 자유)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·

제47조(해산공고 등)
- <u>시·도당 또는 지구당</u>
제59조(허위등록신청죄 등) ① -
<u>.</u>
1
<u>제13</u> 조(시 •
도당 및 지구당의 등록신청사
<u> </u>
2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

 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

 둔 자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